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30
----------	-------

발의연월일 : 2023. 5. 8.

발의자 : 정춘숙 · 김정호 · 윤후덕

김윤덕 · 허종식 · 이원욱

김상희 · 최혜영 · 박정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위생용품과 기능성이 포함된 위생용품 등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을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32
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
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 ③ (생 략)</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u>제10조제1항</u>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u> -----</p> <p>-----</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u>제1항</u>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 ·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p>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0조제3항을</u> 위반하여 기 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 · 대여하거나 판매 · 대여 할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소분 · 수입 · 위생처 리 · 저장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u>제10조제4항을</u> ----- ----- ----- ----- ----- ----- ----- -----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